



HM Government

# 코로나19 유행 시 밀접 접촉 서비스 업계의 근로자와 소비자 안전

사업자,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안전 지침

2020년 8월 13일





## 머리말

### ‘밀접 접촉 서비스’란?

밀접 접촉 서비스에는 미용실과 이용원, 미용과 손톱 관리 서비스 업체, 메이크업, 문신 업체, 태닝 살롱/부스, 스파, 건강관리 업체, 운동요법과 마사지 요법 제공 업체, 전인적 건강관리 업체, 가봉 업체와 맞춤옷 제작 업체, 패션 디자이너 업무가 포함된다.

본 지침은 자신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이동식 밀접 접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소매업체, 예술 관련 업체, 직업 훈련 시설에서 헤어와 미용 관련 서비스를 배우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최고위험구역 소재 업체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은 8월 15일부터 영업이 허용된다.

현재 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상태다. 고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고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문서에는 현재와 같은 질병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동시에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을 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무를 지속하거나 재개할 때, 이 자료가 현실성 있는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자와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체가 현재 정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 본 지침은 이러한 사업체가 새로운 업무 방식을 마련할 때, 또는 영업 재개를 준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강제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객,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각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지침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 고객과 동일하게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업계와 노동조합, 산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위임정부와 함께 영국 공중보건국(PHE), 영국 보건안전청(HSE)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했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공중보건 관리는 각 지역에서 맡고 있으므로 본 지침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역 공중보건 및 안전 요건, 법률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 소재 산업체도 북아일랜드 행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가 작성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앞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버전은 2020년 8월 13일자로 작성된 자료다. 업데이트는 <https://www.gov.uk/workingssafe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safer.workplaces@beis.gov.uk](mailto:safer.workplaces@beis.gov.uk)로 보내기 바란다.

본 문서는 다양한 유형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소개한 문서 중 하나로, 밀접 접촉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나 소매 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 유행 시 다른 사람의 집, 상점, 지점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 본 지침 사용법

본 문서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다.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각 업체는 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의 크기와 종류, 조직, 운영, 관리, 규제 방식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조치가 고객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지침은 건강, 안전, 고용, 평등에 관한 모든 법적인 의무에 선행될 수 없다. 사업장 또는 고용주는 보호 대상자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기존의 의무 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본 지침은 강제성이 없으며, 그와 같은 기존 의무 사항을 준수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자사 근로자와 더불어 업무 대리 업체의 근로자, 도급업체 직원, 그 밖에 사람들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고위험구역에 속한 업체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은 8월 15일부터 영업이 허용된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에 관한 다른 위험요소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해평가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목 차

머리말	4
‘밀접 접촉 서비스’란?	4
본 지침 사용법	5
1. 위험성 확인	7
2. 고객과 방문객의 안전 관리	12
3. 출근 가능한 직원	19
4.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2
5. 업무 공간 청소	28
6.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32
7. 인력 관리	36
8. 유입품과 유출품	40
추가 지침	41
부록	41



# 1. 위험성 확인

목적: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히 각 사업체는 근로자와 방문자에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맞닥뜨릴 위험을 생각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험성 대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한편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의 결정과 실행하고자 하는 통제 조치는 모두 안전에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현재의 위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위해평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며,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는 위해평가 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위해평가를 실시하면 필요한 일을 모두 완료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에서는 위해평가를 돋기 위한 인터랙티브 툴을 제공한다(<https://www.hse.gov.uk/risk/assessment.htm>).

고용주는 건강과 안전에 관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무에 관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일터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경우 근로자와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일터에 코로나19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고용주는 적절한 노동조합이 선정한 보건 및 안전 관련 대표자, 또는 그러한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한 대표자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를 직접 선정할 수는 없다.

이 과정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협력과 신뢰, 공동 문제 해결이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 검토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업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문제에 항상 함께 대처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는 우려 사항은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문제 제기 방법:

- 근로자 대표에게 연락한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에 연락한다.
- 아래 링크에 나온 HSE 양식을 작성한다:  
<https://www.hse.gov.uk/contact/concerns.htm>.
- HSE에 전화로 문의한다(0300 790 6787).



# 1. 위험성 확인

## (계속)

HSE나 지역 당국 등 법률 집행기관에서는 공중보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공중보건 법률과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주를 찾아낸다. 해당 기관에는 업무 현장의 위험성 통제 수준이 개선되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강 보호 규정(코로나바이러스, 제한)(영국)(No.3) 2020』에 따른 사업장 폐쇄도 그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위해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해평가는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때 집행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고용주가 요건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부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집행 명령서가 발부된 후 심각한 위반 또는 미준수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특수한 의무와 조건 등 법률 집행 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권고나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즉각 반응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다수의 고용주가 정부 및 각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영국이 벌이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자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 고용주가 필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역별 새로운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정부의 지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지역별 추가 제한조치에 관한 정보는 본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1.1 위험 관리

목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업무 현장의 위험성을 실효성 있는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고용주는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업무 현장의 위험성을 실효성 있는 최저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 현장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 또는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도급업체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관점에서는 아래 조치를 순서대로 실시하여 근로자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자와 고객 모두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물고 사업장에 오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손을 자주 씻고 표면을 수시로 청소한다.
- 사업장과 업무 현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재택근무자 또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도록(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 전원이 합당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특정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는 2미터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추가적인 저감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손 씻기와 표면 청소 빈도를 더욱 늘린다.
  - 해당 활동의 시행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인다.
  - 고객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모두가 근접한 상태로 장시간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자와 고객 사이에 스크린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업무를 뒷면(고객 뒤에서) 또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주변을 살피한다.
  - 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부 접촉을 피하고 가능하면 장갑을 착용한다.
  - 근로자가 서로 밀접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서로 한 팔 길이보다 가까운 거리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팀을 꾸려서 고정된 구성원끼리 일을 하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 간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 제 2형 마스크는 큰 비말 입자가 고객이나 업무 환경의 표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제작된 3겹 구조의 의료용 안면 마스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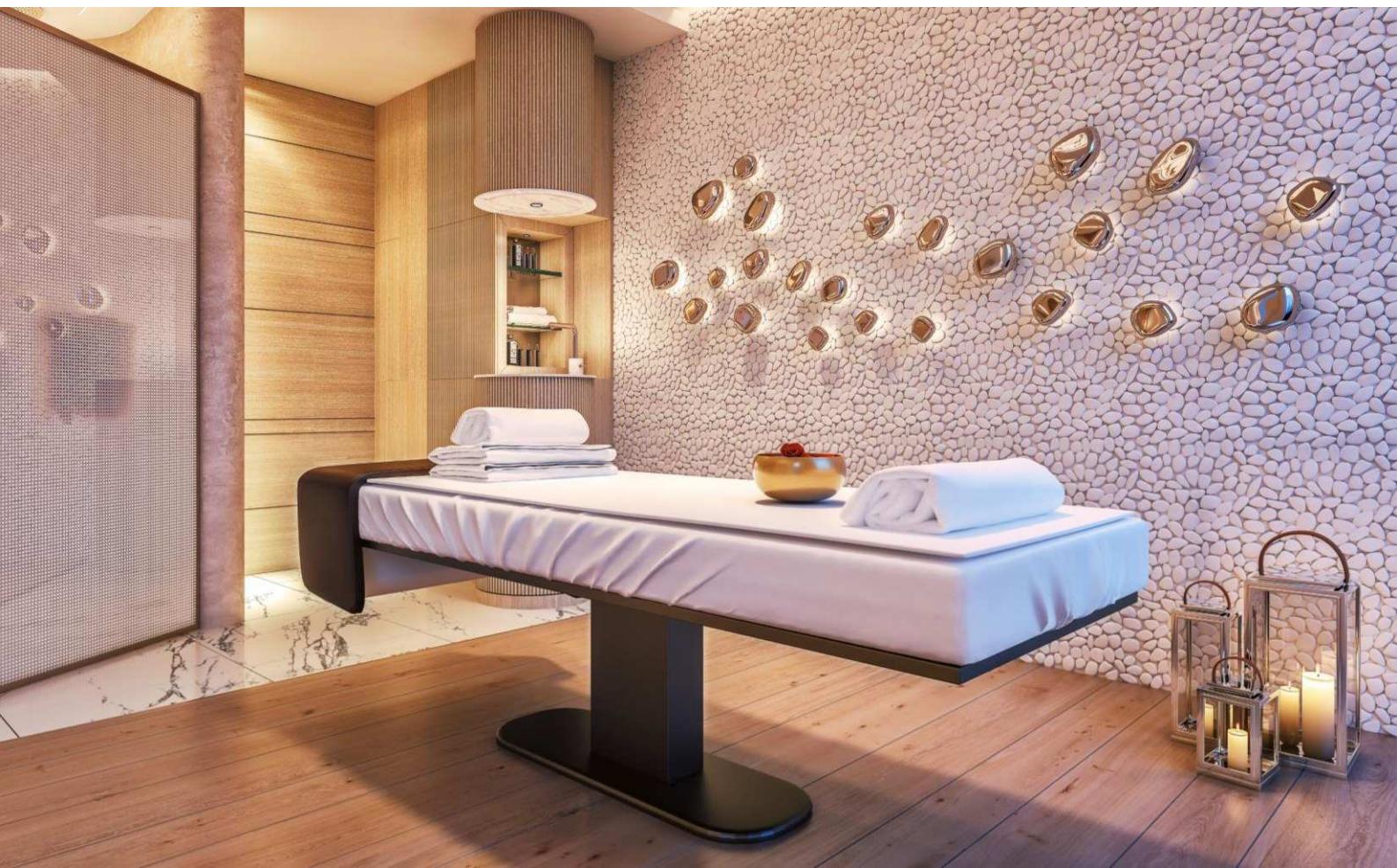


## 1.1 위험 관리(계속)

- 밀접 접촉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마스크를 개인 보호 장비로 마련하여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6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 중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사람은 없는지 각별히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권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노동조합 등에서 세부 사업 분야에 맞게 마련된 권고 사항이 있으면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이 운영 중인 경우, 일터의 코로나19 위험성에 관한 평가를 이미 실시했을 것이다. 해당 경우 본 문서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련된 조치를 검토하여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고객이 호흡하는 공간에서 서비스가 재개되는 등 업무 현장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1.2 위해평가 결과 공유하기

위해평가 결과는 직원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자사 웹 사이트에 결과를 공개한다(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했고 그 위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보여줄 것을 권장한다. 사업장 또는 업체 웹 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눈에 잘 띠는 곳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다. 각 사업장은 본 지침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래 통지문에 서명 후 사업장에 게시하기 바란다.

**2020년 코로나19 안전 확보**  
우리 업체는 코로나19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다 함께 안전한 일터 만들기  
5단계 수칙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청소, 손 씻기, 위생 수칙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일터에서 2m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 1 m 간격을 유지하고 전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저감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주 서명 \_\_\_\_\_ 고용주 대표자 서명 \_\_\_\_\_

고용주 \_\_\_\_\_ 고용주 성명 \_\_\_\_\_ 날짜 \_\_\_\_\_

연락처: \_\_\_\_\_ 업체 건강 및 안전 업무 관리자 \_\_\_\_\_  
또는 보건안전청 [www.hse.gov.uk](http://www.hse.gov.uk), 0300 003 1647

## 2. 고객과 방문객의 안전 관리



## 2.1 고객과 방문객의 안전 관리

목적: 밀접 접촉 서비스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객과 방문자의 건강을 지킨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문을 연 업체는 NHS '검사 및 추적' 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는 고객과 방문객 기록을 자체 관리가 가능하고 NHS 검사 및 추적 기구의 데이터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21일간 임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환자 클러스터나 발생 범위를 한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식점, 호텔, 미용실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많은 업체가 이미 고객과 방문객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체,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데이터 보호 법률에 맞는 이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차후 별도의 [링크](#)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경우, 특히 폐쇄된 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면 목소리를 높일 때 비말이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음악 소리를 줄이는 것,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찾기 위한 검토도 주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본 지침은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차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
- 실내 모임은 최대 두 가구로 제한하고(지원 버블 포함), 야외 모임은 최대 두 가구(또는 지원 버블)까지, 또는 가구 수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민간 가정에서 3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정원과 주택 야외 공간 포함).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체는 두 가구 이하 구성원들로 개별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사업장에 30인 이상이 모일 수 있다(지원 버블은 1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러 개별 그룹이 총 인원 30명 이상 사업장 실내에 함께 있을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올 때, 또는 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손을 씻도록 권장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적절히 지켜질 수 있는 고객의 최대 숫자를 계산하고 한 번에 예약을 잡는 고객의 수를 제한한다. 사업장의 바닥 면적과 혼잡 발생 가능 구역, 통행량이 많은 곳도 고려해야 한다.
- 필수 서비스와 도급업체 방문 일정을 사람 간 접촉과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고객 예약 시 가능하면 혼자 오도록 요청한다.
- 어린이와 동행하는 고객에게는 항상 아이를 지켜봐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2.1 고객과 방문객의 안전 관리 (계속)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고객과 도급업체 관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과 사업장 도착 후에 현재 시행 중인 지침을 알린다. 관련 정보는 업체 웹 사이트와 예약 양식, 출입 경로에도 게시한다.
- 사업장 내에 불비는 구역과 고객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동선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 줄을 관리하거나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업체에서만 실행이 가능할 수 있다.
- 출입구나 비상구, 대기 줄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고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와 주차장은 장애인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 대기 줄을 서는 곳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고 안전한 곳인 경우 야외에 마련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주차장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야외에 줄을 서는 경우 줄 서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차단 막, 안내 직원 배치 등을 통해 서로에게, 또는 다른 사업장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사,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이 한 곳에 모이는 경우와 같이 고객 한 명에게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서비스는 예약제로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고객 대기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대기 공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규모인 경우,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한다.
- 고객에게 정해진 예약 시간에 늦지 않게 와 줄 것을 당부한다.
- 업무 방식을 검토하여 고객과의 접촉이 지속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머리 땋기, 마사지 등 장시간 이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 2.1 고객과 방문객의 안전 관리 (계속)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탈의실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고객에게 집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공 시간이 짧은 서비스, 또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스파 시설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우나와 증기 욕실을 폐쇄해야 한다.
- 스파 시설이 가동되는 헬스클럽, 목욕탕, 온천 수영장, 월풀, 수 치료 시설, 수영장은 운동/레저 시설에 관한 [정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고객에게 모임 제한 요건을 인지하고 잘 따라줄 것을 권고한다. 예약 시, 또는 현장 도착 시 이를 고지한다.
- 고객과 약속을 잡기 전,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 최근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 체온이 높은 상태입니까?
  - 미각이나 후각을 잃거나 변화했습니까?
- 고객이 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다고 답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집에 머물도록 하고 방문 일정을 재조정한다.
- 이웃 사업장 및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매일 사업장에 오는 사람의 수를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영업 시작 시간을 늦추면 불비는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자와 혼잡을 줄일 수 있다.
- 이웃 사업장 및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가능하면 고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나 자전거 거치대 등의 시설을 추가로 마련한다.



목적: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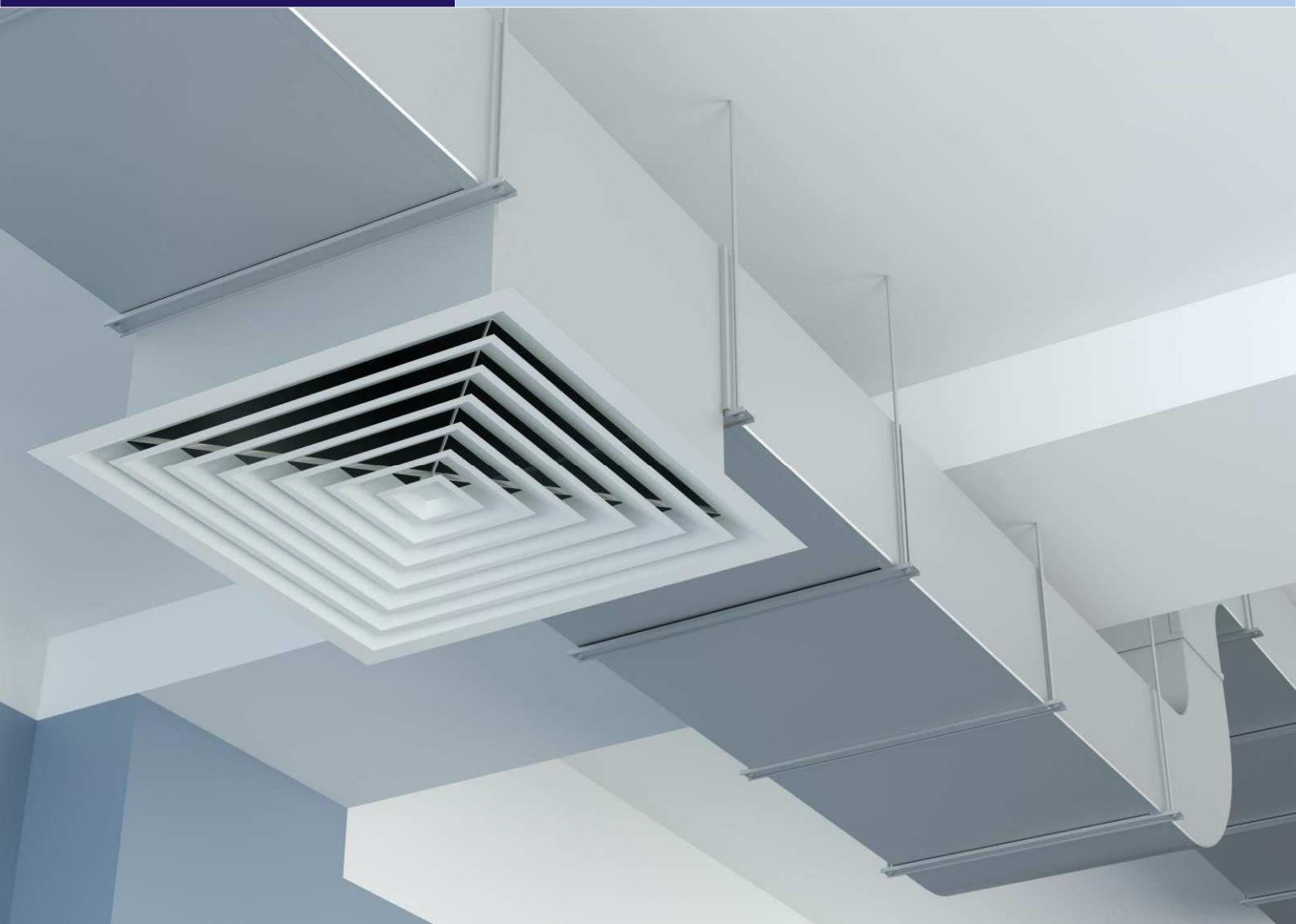
건물의 환기는 시설 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역에 신선한 공기가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환기 장치 이용 시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 2.2 환기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팬 속도를 조절하여 환기율을 이전보다 높인다.
- 건물에 사람이 있을 때는 환기 장치를 가동한다.
- 제조사가 안내한 사항에 따라 필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 환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 천장 환기 팬과 탁상용 팬을 활용하여 공기 순환을 향상시킨다.





목적: 화장실은 열어두고, 위생 상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청결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강화한다.

-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사업장 내부의 화장실은 항상 열어두고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 2.3 고객용 화장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안내판과 포스터를 통해 손 씻기 요령과 손 씻기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 것,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에 대고 하고 다 쓴 휴지는 안전하게 버릴 것, 휴지가 없을 때는 팔에 대고 할 것 등을 안내한다.
- 평상시에 대기 줄이 형성되는 곳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질 수 있도록 간격을 표시하고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장문 제한한다(이 때 입구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장실 입구에는 안전이 확보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에는 흐르는 물과 액체 비누, 손을 말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종이 타월 또는 손 건조기)을 마련하여 손 위생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의 청결한 이용과 청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소 빈도를 이용 빈도에 맞게 높인다. 일반적인 청소 제품을 사용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세심하게 청소한다. 단단한 표면은 모두 일회용 천이나 종이 행주로 청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화장실에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경우 문은 계속 열려 있도록 고정해둔다.
- 이동식 화장실과 대규모 화장실 시설은 청소에 더욱 각별히 주의한다.
- 청소 일정을 눈에 잘 띠는 곳에 써 두고 업데이트한다.
- 쓰레기통을 더 많이 비치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빈도를 높인다.



## 2.4 지침 제공과 설명

목적: 사람들이 안전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고객이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과 방문 일정을 잡을 때, 그리고 사업장 도착 시 고객의 예상되는 행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에 관한 안내를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사업장 내부와 외부의 근로자와 고객에게 서면 작성한 문서를 통해, 또는 구두로 최신 지침을 제공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포스터나 정보 안내문 등을 비치하여 알려야 한다. 이 때 청각이나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수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 핵심 시설은 현장에서 지켜야 할 프로토콜과 규칙 등 안전 유지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손 씻기 안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리랜서 작업자가 있는 경우 이 점에 더욱 유의한다.
- 사업장 곳곳에 최신 지침을 눈에 잘 띠게 게시한다.
- 경찰과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마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 대기 줄을 서는 장소와 줄의 규모 등 고객과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내용인지 확인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경찰과 지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고객에게 해산 또는 특정 구역에서 나갈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안전을 위해 서로 간격을  
유지하세요



### 3. 출근 가능한 직원

#### 목적:

고용주는 업무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밀접 접촉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규정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린 경우, 사업장에 누구도 출근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이 목적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나,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확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거리와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특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지 상의해야 한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더욱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지역 교통에 발생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저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직원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분산시키는 등). 고용주가 직원이 반드시 사업장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코로나19에 대비한 사업장 위해평기에 해당 판단을 반영하고 본 지침을 준수하여 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현장으로의 복귀 여부는 반드시 근로자와 의미 있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단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 논의한다). 의미 있는 협의란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터 복귀에 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논의 내용에는 복귀 시점과 복귀 단계, 시행 중인 위험 저감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로 출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현장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한다.
- 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계적인 출근 재개 계획을 수립한다.
- 밀접 접촉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고객을 만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장소 모두 위험성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다수가 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한다.
- 현장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복지와 현재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개인 안전을 포함한 근무 상태를 확인한다.
-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무 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목적:** 감염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작성한 [보고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결과의 차이'에 따르면, 감염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 3.1 고위험군 보호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 노년층 남성
-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사람
- 당뇨 등 질환자
- 일부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민족(BAME) 출신자

고용주는 위해 평가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단,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실시되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이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출근하는 경우 가능하면 안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은 임시로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근무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위험요소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자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적절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과 함께 사는 직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 권고, 전화로 격려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 및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관한 최신 지침을 참고한다.
-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업무를 맡기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목적:** 현행 정부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가족 또는 지원 버블 중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서비스에 따라 자가격리가 권고된 사람이 이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 3.2 자가격리자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중 급여 규정 관련 현행 지침을 확인한다.
- 고열, 기침이나 후각 상실 증상이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경미한 수준이라도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근로자는 검사일로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요건은 7월 30일과 그 이후에 자가격리를 시작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증상이 나타난 사람,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에 관한 현행 지침을 확인한다.

**목적:** 차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고용주는 본 지침 적용 시 근로자와 개개인의 제각기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또는 민족과 같은 보호 특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와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를 각별히 챙겨야 할 책임이 있다.

## 3.3 직장 내 평등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각기 다른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 보호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또는 현재 고려 중인 조치가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소통해야 한다.
- 평등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평가한다.
- 조치를 마련할 때 특정 그룹에 다른 근로자보다 부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돌봐야 할 대상이 있는 사람, 특정 종교인 등이 그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 4.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목적:

가능하면 근로자가 일터에 도착할 때, 퇴근할 때, 근무 중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가능한 경우 업무 현장에서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밀접 접촉 서비스 제공 시 업무 특성상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해당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자영업자는 위험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저감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손 씻기, 표면 청소 빈도를 더 높인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줄인다.
  - 고객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모두가 근접한 상태로 장시간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자와 고객 사이에 스크린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업무를 뒷면(고객 뒤에서) 또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주변을 천회한다.
  - 처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부 접촉을 피하고 가능하면 장갑을 착용한다.
  - 근로자가 서로 밀접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팀을 꾸려서 정해진 구성원끼리 일을 하도록 한다.
  - 고객 대기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을 때만 개방한다.
  - 고객 의자 등 치료 또는 서비스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은 물론 사업장 또는 가정 내 모든 공간, 대기실,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러한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 곳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목적: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현장 도착 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4.1 출퇴근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일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분산시킨다. 이 때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사람들이 걷거나 달려서,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등의 시설을 추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
- 고객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도착 전에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의한다.
- 통행 혼잡을 줄인다. 예를 들어 가능한 경우 사업장 출입구를 늘린다.
- 가능한 경우 입구와 출구에서 한 방향 통행만 이루어지도록 표시하고 안내한다.
- 입구와 출구에 손 씻는 시설을 마련하고(불가능한 경우 손 소독제 비치) 가능하면 키패드와 같은 접촉식 보안 장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 부지를 공유하는 다른 사업장과 협력하여 해당 부지의 출입 인원을 최소화한다.
- 출퇴근에 관한 [정부 지침](#)을 확인한다.

목적: 일터에서 이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한다.

## 4.2 이동식 살롱, 사업장, 그 밖에 고객 가정 방문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한 경우 고객과 고객 사이, 씻는 장소, 접수처 등 업무 구역 사이, 뒷면 또는 앞면에 차단 막이나 가림막과 같은 물리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 근로자와 고객 모두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특히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구역은 간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하고 안내판을 마련한다.
-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한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층 건물에 위치한 대규모 일터 또는 사업장 출입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전에 가정 내 다른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객과 논의한다.



## 4.3 업무 현장과 작업 구역

목적: 작업 구역에서 일하는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경우, 작업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
- 작업 구역은 가능한 한 개인별로 할당되어야 한다. 한 구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경우, 공유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작업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지 판단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마련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사업장 배치와 업무 과정을 검토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 고객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고객 의자를 하나씩 띄워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지킬 수 있도록 바닥에 테이프나 페인트로 표시한다.

■ 업무가 겹치거나 예약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능하면 가상 통신으로 고객과 접촉하여 사업장에 입장할 시점을 알린다.

■ 고객이 예약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요청하고, 대기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 실행 가능한 경우 작업 구역에 가림 막을 활용하여 물리적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무자가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실무자와 고객 사이에 그러한 물리적 차단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 4.3 업무 현장과 작업 구역 (계속)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근로자가 서로 밀접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팀을 꾸려서 정해진 구성원끼리 일을 하도록 한다. 스타일리스트와 견습생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 계산 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팁을 포함한 결제는 비접촉 방식을 활용한다.
- 근로자간에 업무 장비의 공유 빈도를 최소화한다. 사용 후에는 자주 세척하고, 가능하면 정해진 개별 공간에 보관한다.
-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손톱 가는 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회용품이 아닌 도구는 사용 후 다른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 세척하고 살균 또는 멸균한다.

계산 시 접촉을 최소화한다.





목적: 공용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4.4 공용 구역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직원 휴게실과 식사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분산하고, 휴게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관리한다.
- 안전한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원격 근무로 비어 있는 작업 구역 또는 건물에 공용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
- 접수처나 비슷한 구역에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근로자가 각자 식사와 음료를 챙겨오도록 권장한다. 고객은 사업장 내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물이나 병에 든 생수 외에 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 대기실 등의 좌석과 테이블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면 접촉을 줄인다.
-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는 현장에 머무르도록 한다.
- 화장실, 직원 공간, 그 밖에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는 구역 등 공용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작업 구역 내 이동과 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약 시간 전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장비를 준비한다. 미용실의 경우 가위나 빗 등이 해당된다.
- 예약 시 대기실에서 고객이 혼잡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다. 특히 대기 공간이 작은 곳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한다.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 받는 고객만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염색 등 서비스나 처치 특성 상 중간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

직원용 주방 배치를 바꾼 사례





## 4.5 사고, 보안, 그 밖에 사건

목적: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거나 소방, 침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도운 경우, 상황 직후 손 씻기 등 위생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사고 및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코로나19로 운영 및 업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에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변경 후 새로운 보안상 위험요소가 생기거나 기존 위험요소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보안상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정부 지침](#)을 확인한다.



## 5. 업무 공간 청소





## 5.1 영업 재개 전

목적: 폐쇄했거나 부분 이용된 장소 또는 공간에 청소가 완료되고 영업 재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영업 재개 전에 폐쇄되어 있던 모든 장소나 일부 폐쇄됐던 곳을 평가한다.
- 영업 재개 전 청소 절차를 마련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환기 장치에 수리나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공간 점유 인원이 평소보다 줄더라도 환기율이 자동으로 낮춰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 에어컨은 대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여러 건물과 연결되어 있거나 기능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냉난방 환기 시스템(HVAC) 엔지니어 또는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목적: 업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작업 공간과 도구,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인 청소용품으로 수시로 청소, 살균, 멸균할 수 있도록 예약 시간에 간격을 둔다.

■ 문손잡이, 직원이 다루는 장비 등 접촉이 수시로 일어나는 물건과 표면은 자주 닦아내고 세척에 사용한 물건은 접촉 없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등 적절한 폐기 방안을 마련한다.

■ 하루 업무가 종료되면 업무 공간을 청소하고 폐기물과 소지품을 작업 공간 밖으로 제거한다.

■ 고객용 의자, 치료용 침대 및 가위와 같은 도구 등 재사용 가능한 모든 장비는 다음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 그리고 교대 후 업무 시작 시, 교대 근무 종료 시 매번 세척하고 청소한다.

■ 고객마다 일회용 가운을 제공하고 적절히 폐기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운(그리고 평소와 같이 타월도)을 고객마다 분리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 세탁한다.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여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직원들이 가정에서나 출퇴근길에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유니폼은 매일 교체하고 착용 직후 세탁한다.

■ 근로자와 고객이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한 번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통을 여분으로 제공한다.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포함한 개인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 5.2 업무 현장 청결 유지

문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물건과 표면을 닦는다.





## 5.3 위생 - 손 세척, 위생 시설, 화장실

목적: 근무시간에 모두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안내판과 포스터를 통해 손 씻기 요령과 손 씻기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 손을 철저히 씻고 서비스 제공 중, 다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손 씻는 빈도를 늘린다. 이동식 서비스 제공 시 손 씻는 곳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손 소독제를 이용해야 한다.
- 고객이 콧물이나 기침이 나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지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알린다. 사용한 휴지는 적절히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콧물이나 기침이 나서 휴지를 사용한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세정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 위생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표지판을 마련한다.
-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부 접촉을 피하고 가능하면 장갑을 착용한다.
- 사업장에는 손 씻는 곳과 함께 여러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화장실 이용 수칙과 청소 지침을 마련하여 청결이 유지되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 혼잡한 구역은 청소를 강화한다.
- 쓰레기통을 늘리고 자주 비운다.
- 손 씻기 후 종이 타월이나 전기 드라이어 등 손을 말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다음 고객이 오기 전에  
업무 공간을 청소한다.





목적: 탈의실과 샤워실에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 5.4 탈의실과 샤워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탈의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샤워실과 탈의실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샤워실, 로커 룸, 탈의실의 청결한 사용과 청소 지침을 마련하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물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 영업시간 중, 그리고 영업 종료 후 시설 전체의 주기적인 청소를 강화한다.
- 사진촬영이나 패션쇼 등으로 탈의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청소하고 한 번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실시한다.

목적: 사업장 내 물건 접촉을 통한 확산을 줄인다.

## 5.5 물건, 상품, 기타 재료의 취급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근로자와 고객이 손을 더 자주 씻도록 하고 손 씻는 시설을 늘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 세탁물 주변의 표면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먼지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탁물 취급 절차를 강화한다.
- 가능하면 물건을 손으로 직접 전달하지 말고 놓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따로 수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업무 장소로 들여온 물건과 상품에 대한 세척 절차를 강화한다.
- 직원이 업무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장비는 수시로 세척한다.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
- 사업장에 배달되는 물품은 놓고 가면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대인 접촉을 최소화한다.
- 개개인의 가정에 들이는 장비는 일반적인 세척용품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 살균 또는 멸균한 후에 사용하고 다음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세척, 살균 또는 멸균한다.
- 상품 테스트 시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거나 고객의 상품 테스트를 도울 때 간격을 유지한다.



## 6.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HM Government

## 6. 개인보호장비 (PPE)

PPE는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상 위험요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안전 헬멧과 장갑, 보안경, 눈에 잘 띠는 의복, 안전 신발, 안전벨트, 차단/가림 막 등이 포함된다. 호흡기 보호 장비도 PPE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위험요소로 인해 이미 업무 현장에서 PPE가 사용되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본 문서의 첫 부분에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 준수도 그러한 내용에 포함된다.

코로나19는 업무 현장에서 보통 맞닥뜨리는 위험요소와는 종류가 다른 위험요소 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위생과 호흡기 위생, 업무 환경 [청소](#)와 구성원이 고정된 팀 또는 파트너와의 업무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용실, 이용원, 스파, 뷰티 살롱, 문신이나 사진 스튜디오 등과 같은 사업장은 직원이 고객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고 보통 장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비스 시간이 길면 하루에 만나는 고객과 무관하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타인과 접촉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헤어드레서, 피부미용사 등)는 타인의 얼굴, 입, 코와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와 함께 보호 장비를 추가로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명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마스크가 추가되어야 한다.

투명 가리개는 얼굴을 모두 덮어야 하며(착용자와 고객 사이에 재채기, 기침, 말을 할 때 생기는 호흡기 비말을 차단하는 차단 막이 된다) 이용자에게 맞는 크기로 사용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얼굴 가리개는 이마부터 턱 아래, 얼굴 양쪽 옆면을 모두 가려야 한다. 일회용 가리개나 재사용 가능한 가리개가 있으며, 재사용 가능한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고객과 만나기 전 일반적인 세척용품으로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





## 6. 개인보호장비 (PPE) (계속)

제 2형 마스크는 얼굴 가리개와 함께 착용해야 한다. 제 2형 마스크는 PPE에 해당하지 않으나 올바르게 사용하면 입과 코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물리적 차단 막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전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제 2형 안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이용, 제거 지침은 아래와 같다:

### 안면 마스크 착용하기

1. 마스크 착용 전에 비누를 이용하여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
2. 묶어서 쓰는 마스크는(귀에 거는 고리 대신) 귀 뒤쪽과 목 뒤에 단단히 묶는다.
3. 입과 턱이 모두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4. 볼 부분에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양손으로 코 부분의 철심을 눌러서 고정한다.

### 안면 마스크 안전하게 이용하기

손으로 얼굴이나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새 마스크로 교체한다.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마스크는 코와 입을 모두 덮어야 한다.
- 목에 걸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된다.
- 한 번 착용한 후에는 손대지 않는다.
- 습기가 생기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호흡이 힘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한다.
- 한 번 착용 후 안전하게 폐기한다. 비접촉식,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다.

### 마스크 벗기

안면 마스크는 안전하게 벗는 것이 중요하다.

1. 먼저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한다.
2. 묶어서 착용하는 마스크는 먼저 아래 매듭을 풀고 위쪽 매듭을 푼다.
3. 손으로 끈만 잡고 얼굴에서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4. 안전하게 [폐기한다](#). 비접촉식,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다.
5. 다시 손을 씻는다.

[NHS 시험 및 추적](#) 서비스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일터에서 얼굴 가리개와 제 2형 안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 착용 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나 전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손 소독 젤과 PPE를 포함한 의료 등급 장치와 장비는 별도 [규정](#)으로 관리된다.

## 6.1 고객의 마스크 착용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착용자와 주변 사람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마스크는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과 코만 제대로 가리면 된다.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여러 실내 시설 이용 시 법적 요건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8월 8일부터 손톱 관리실과, 뷰티 살롱, 미용실, 이용원, 마사지 숍, 문신 및 피어싱 업체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부위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처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벗을 수 없다.

평소에 잘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폐쇄된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착용 시점과 착용 장소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일부 경우 [나이, 연령, 평등권 등의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는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전,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
- 마스크 착용 시 얼굴이나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말 것.
- 마스크가 젖으면 교체할 것.
- 손을 계속해서 자주 씻을 것.

각 사업장은 입구에서 알리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위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할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 시 경찰이 법률 위반 사실 적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용 마스크를 사업장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입술 움직임, 얼굴 표정,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이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A professional Black woman with short hair is smiling while talking on a black smartphone. She is leaning over a white desk, her right hand on the keyboard of a silver laptop. In front of the laptop is a clear cup filled with various colored pencils. The background shows a rack of colorful fabrics or garments.

## 7. 인력 관리



목적: 개별 업무 그룹을 형성하고 직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꾼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근로자를 팀이나 교대 근무조로 나누거나 개별 업무를 할당한다. 해당 팀이나 교대 조는 구성원을 고정하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사람과만 접촉하도록 한다.
- 물건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놓고 가면 수령하는 지점이나 전달 장소를 정해서 직접 접촉을 피하는 방안을 찾는다.
- 교대 근무자에게 업무 인계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한다.
- 작업 공간에 가능하면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등 역할/업무 순환을 제한한다.
- 건물 입구와 출구 등에서 직원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시작 시간을 분산한다.
- 고객 서비스 진행 방식과 일정을 사전에 직원과 상세히 정하고, 고객의 세부 예약 내용을 전달한다.
-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일지를 21일간 임시 보관하고 검사 및 추적 서비스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NHS 검사 및 추적국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 클러스터와 발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목적: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위해평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한 최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지역 공중보건 당국에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단일 연락지점(SPOC) 역할을 할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 공중보건부 건강보호팀에 연락하여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각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의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이 감염 발생을 최종 확인한 경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의 세부 기록 제출과 연락처 확인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의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경우 고용주에게는 감염 관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각 직원에게 연락하는 한편 예방 메시지를 강화하여 전달한다.

#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 7.1.1 근무 형태와 업무 그룹

#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 7.1.2 일터의 감염 발생



목적: 불필요한 출장을 피하고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킨다.

## 7.2 업무 관련 이동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불가능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가족이나 지원 버블 외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수를 최소화 한다. 출장 동료는 고정하고 가능하면 환기율을 높인다. 동승자는 마주보고 앉지 않는다.
- 업무 종료 시, 또는 업무 인계 시 다음 업무 전에 공용 차량을 청소 한다.
- 다른 장소로 배송 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결제나 문서 교환 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결제를 이용하거나 전자 서명, 전자문서 교환 등을 활용한다.





목적: 모든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안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한다.

## 7.3 소통과 교육

### 7.3.1 업무 복귀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업무 방식은 근로자의 이해를 돋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시로 전달한다.
- 업무 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된 소통 경로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소통 방안과 교육 자료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 마련된 업무 절차가 있는 경우 이 점에 신경 쓴다.
- 직원들이 PPE 사용, 보관, 세척 또는 폐기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 7.3 소통과 교육

### 7.3.2 지속적인 소통과 게시물 활용

목적: 안전 조치의 시행 상황과 업데이트 여부를 모든 근로자가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업무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도록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그룹 등도 포함).
-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시기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한다.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및 복지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시각 장애 등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지침 내용은 이미지와 명확한 표현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한다.
- 서비스 예약 일정 변경이나 재고 소진 사실 등을 대면 소통 대신 화이트보드, 게시판 등 시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알린다.
- 공급업체, 고객, 업계 단체가 서로 경험을 채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다.
- 가정에서 밀접 접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고객 가정에 도착하기 전 꼭 필요한 안전 조치에 관해 협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게시물





## 8. 유입품과 유출품

### 목적:

발송구역 등 사업장에 물품이 들어오거나 사업장에서 물품이 나갈 때, 특히 그 양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표면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배송 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사전 예약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은 비접촉 방식으로 배송한다.

■ 배송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주문한다.

■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차량 운반되는 물품의 적재와 하역, 배달원과 입구에서 만나는 일을 한 명이 담당하도록 지정한다.

■ 배송 일정은 고객 예약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한다.

■ 창고에 물건 보관하기, 채워 넣기 작업은 영업시간 외에 실시한다.



## 추가 지침

코로나19: 무엇을 해야 할까

<https://www.gov.uk/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산업체와 고용주 지원 정보

<https://www.gov.uk/coronavirus/business-support>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근로자를 위한 일반 지침

<https://www.gov.uk/guidance/guidance-and-support-for-employees-during-coronavirus-%ec%95%84%ec%95%84%ec%95%84>

## 부록

정의

공용 구역	'공용 구역'은 한 명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과 시설을 의미한다. 구내식당, 접수처, 회의실, 종교시설, 화장실, 정월, 화재 대피 공간, 주방, 운동 시설, 창고, 세탁 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 2형 마스크	제 2형 마스크는 큰 비밀 입자가 고객이나 업무 환경의 표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제작된 3겹 구조의 의료용 안면 마스크를 의미한다.
지원 버블	'지원 버블'은 혼자 살거나 부양자녀와 살고 있는 성인 1인 가구가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다른 가정 한 곳을 지정하여 형성된 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지원 버블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a href="https://www.gov.uk/guidance/meeting-people-from-outside-your-household">https://www.gov.uk/guidance/meeting-people-from-outside-your-household</a>

# 부록

## 정의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은 주치의로부터 해당 그룹에 포함된 사실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전달 받는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on-shielding-and-protecting-extremely-vulnerable-persons-from-coronavirus/guidance-on-shielding-and-protecting-extremely-vulnerable-persons-from-코로나19">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on-shielding-and-protecting-extremely-vulnerable-persons-from-코로나19</a>
임상적으로 취약한 사람	임상적으로 취약한 사람에는 70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아래 링크에 ‘임상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해당되는 모든 사례가 나와 있다:  <a href="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ying-alert-and-safe-social-distancing/staying-alert-and-safe-social-distancing">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ying-alert-and-safe-social-distancing/staying-alert-and-safe-social-distancing</a>
최고위험구역에 속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얼굴 왁싱, 제모, 실면도 서비스</li><li>• 얼굴 관리</li><li>• 고급 얼굴 관리 기술(전자기기나 기계 사용)</li><li>• 속눈썹 관리</li><li>• 메이크업</li><li>• 미세침 포함 롤러로 피부 자극</li><li>• 피부 각질 제거</li><li>• 눈썹 문신</li><li>• 전기분해를 이용한 피부 관리</li><li>• 눈썹 관리</li><li>• 턱수염 정밀 관리, 형태 다듬기, 면도</li><li>• 고급 미용 테라피 및 미용 관리</li></ul>



© Crown copyright 2020

본 자료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는 한 열린 정부 라이선스 v3.0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version/3](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version/3)

본 자료는 다음 정부 웹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gov.uk/working-safely](http://www.gov.uk/working-safely)

본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권 규정에 의거하여 복사하거나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자료 등 본 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enquiries@beis.gov.uk](mailto:enquiries@beis.gov.uk)